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년월일 : 2002. 2. 1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순위 신설
(안 제36조제2항)
-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함(안 제50조)
- 건축물의 도시계획세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함(안 제9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세회13400-3690 2001.12.28)
- 라. 입법예고 : 필요 없음
-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제1항중 “1월31일“을 5월31일”로 한다.

제90조의 표 건축물란중 과세기준일 “매년5월1일”을 “매년6월1일”로 하고 납기 “매년6월16일 ~ 6월30일”을 “매년7월16일 ~ 7월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납세 의무자에 관한 적용례)36조의제2항의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평창군세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6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u><신 설></u></p>	<p>제36조(납세의무자) ①----- ----- -----.</p> <p>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 style="margin-left: 20px;">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 ----- ----5월 31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과세대상</th> <th style="width: 25%;">과세기준일</th> <th style="width: 50%;">납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5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6일 ~6월30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10월16일 ~10월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과세대상</th> <th style="width: 25%;">과세기준일</th> <th style="width: 50%;">납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7월16일 ~7월3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	-----	-----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	-----	----- -----																	

관계법령발췌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2001. 12. 29 신설>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2조(재산세 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08조(신고와 납부)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881 /전송 033)249-4081
 세무회계과 과장 : 손 호 정 담당 : 최 준 승 담당자 김 태 영

문서번호 세회 13400-3690

시행일자 2001.12.28 ()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선 결	과 장	2001.12.28	지	
점	일자	2001.12.28	시	
	시간		전	
수	번호	387	계	
처 리 과	세 무 과		공	
담 당 자	MAJIN		람	
심 사 자			심 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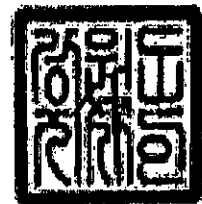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 및 일반조례 개정안 송부

1.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2002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 표준안"을 이첩하여 류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당해 시군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선정 개정하여 주시기

2. 아울러, 2001년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시군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자료도 함께 송부하니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로 위).

- 붙임 : 1)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더(01-07) 더(08-18)